

#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5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공단의 근로자등 특별한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와 외국인에게 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.
- '95. 4. 20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선부3동(화정동)의 일반공설묘지 현황을 조례에 수록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(안 제6조)
- 화정동 일반공설묘지 현황을 장묘시설 현황에 수록 (안 제4조 별표1)

## □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
- 예산상황 : 없음

## **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**

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명칭과 위치)중 "별표1"을 "별지"와 같이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용자의자격및제한)①장묘시설은 안산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(상주를 포함한다)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 
②시장은 묘지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성년자, 사산아 및 개장한 유골을 공설공원묘지 및 일반공설묘지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**부  
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장묘시설의 명칭 등

### 1. 공설공원묘지

명 칭	위 치	면 적(㎡)
안산시 공설공원묘지	와동 37 - 2	158,072

### 2. 일반공설묘지

명 칭	위 치	면 적(㎡)
선부동 일반공설묘지	선부동 산 59	8,231
부곡동 일반공설묘지	부곡동 산 12	19,240
팔곡동 일반공설묘지	팔곡동 산 42	4,463
사사동 일반공설묘지	사사동 산 23	7,736
북동 일반공설묘지	북동 산 54	6,744
동동 일반공설묘지	동동 산 281	3,967
선감동 일반공설묘지	선감동 산 130 - 1	4,679
남동 제1일반공설묘지	남동 산 131	8,430
남동 제2일반공설묘지	남동 산 132	8,926
남동 제3일반공설묘지	남동 산 103	7,891
남동 제4일반공설묘지	남동 산 360	7,537
남동 제5일반공설묘지	남동 산 369	9,818
풍도동 일반공설묘지	풍도동 산 207	22,711
화정동 일반공설묘지	화정동 산 116 - 1	48,000

#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사용자의자격)장묘시설은 안산시 관할 구역내 주소를 가진자(상주를포함한다)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</p> <p>( 신 설 )</p>	<p>제6조(사용자의자격)①장묘시설은 안산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(상주를포함한다)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자와 외국인에 대하여도 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묘지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미성년자,사산아 및 개장한 유골을 공설공원묘지 및 일반공설묘지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( 삭 제 )</p>
<p>제7조(사용허가의제한)시장이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안산시를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가 장묘시설 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</p> <p>2.미성년자,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공설공원묘 지 및 일반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</p>	

26

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 별표 1 ]			[ 별표 1 ]		
명 칭	위 치	면 적	명 칭	위 치	면 적
( 생 략 )			( 현행과 같음 )		
2. 일반공설묘지			2. 일반공설묘지		
1. 공설공원묘지 ( 생 략 )			1. 공설공원묘지 ( 현행과 같음 )		
( 신 설 )			화정동 일반공설묘지	화정동 산 116-1	48,000